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10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 : 임이자 · 허은아 · 권명호

김기현・추경호・김형동

김성원 · 이종성 · 이종배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징수금의 고지·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송달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90%가 넘는 국민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편의성과 고지업무 등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고지 적 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납 및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이어서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납입고지를 전자로 송달하고, 전자송달로 납입고지 문 서를 받고 체납하여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도 전자로 송달하는 것을 기본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리고, 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보수총액신고(보험료 정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게 되므로,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는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 4, 제32조, 및 제45조의2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서류의"를 "문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제16조의8에 따른 문서 및 제27조에 따른 문서 · 독촉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세법"은 "제16조의8 또는 제27조"로, "국세정보통신망"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연대납세의무자"는 "연대납부의무자"로, "국세"는 "보험료 또는 이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으로, "납세관리인"은 "납부관리인"으로, "정부"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 "세무서" 및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는 각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제16조의8에따른 문서 및 제27조에 따른 문서·독촉장을 전자송달할 수 있다.
- 1.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한 경우: 제16조의8 및 제27조에 따른 문서
- 2. 제16조의8 및 제27조에 따른 문서를 전자송달 받고 해당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
-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른 전자송달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문서는 우편으로 송달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서 등의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입을 고지하거나 독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	<u><삭 제></u>
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	
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	
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u>경우</u>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	<u><삭 제></u>
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	
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u><</u> 삭 제>

고지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 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주소에 <u>입력된 때에 그 사</u> 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 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 지에 대한 신청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 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 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 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 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

<삭 제>

<삭 제>

1212(8167	0 1	大	77)
①			
<단서 삭제>			

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에 따른 문서 및 제27조에 따른 문서・ 독촉장--------. 이 경우 "이 법 또는 세법" 은 "제16조의8 또는 제27조"로, "국세정보통신망"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정보통 신망"으로, "연대납세의무자"는 "연대납부의무자"로, "국세"는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으로, "납세관리인" 은 "납부관리인"으로, "정부"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직 원"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 "세무서" 및 "해당 서류의 송 <신 설>

<신 설>

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시•군•구"는
각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으로 본다.

-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제16조의8에 따른 문서 및 제27조에 따른 문서・독촉장을 전자송달할 수 있다.
- 1.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그 밖의 징수금을 자동이체의방법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한경우: 제16조의8 및 제27조에따른 문서
- 2. 제16조의8 및 제27조에 따른
 문서를 전자송달 받고 해당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른 독
 촉장
-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 른 전자송달에 대하여 납부의 무자가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는
	우편으로 송달한 때 도달한 것
	으로 본다.
② (생 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u><신 설></u>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u>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u>
	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
	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
	<u>하지 아니한다.</u>